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

의 안 번 호	16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. 1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‘99년부터 적립·조성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조성 : 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, 기금의 운용수익금, 시수입금, 기타 수입금 (안 제2조)
- 나. 기금의 운용 :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(안 제5조)
- 다. 기금운용심의 :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(안 제5조)
- 라. 기금의 관리 : 기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제좌를 설치하며, 부산광역시사하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·관리(안 제4조)
- 마. 기금의 용도 : 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함(안 제3조)
- 바. 회계공무원 :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, 기금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하며,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담당이 됨. (안 제11조)
- 사. 기금의 회계관리 : 기금의 회계는 부산광역시사하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기금운용관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(안 제10조, 안 제11조)
- 아. 결산 및 보고 :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안 제12조)

### 3. 관계법령

재난관리법 제56조,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54조, 제55조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수습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시 수입금
4. 기타 수입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다.

②영 제54조 제1항 제4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, 위험지역의 표시판 및 안전시설 설치
2. 긴급한 재난발생우려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, 자재 등의 구입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조성된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④구청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의 운용기금이 부족할 경우 영 제54조 제1항 제5호의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적립기금의 일부를 운용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⑤당해연도 운용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적립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한다.

제5조(기금운용심의)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(지역위원회)에서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안
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
3. 기금의 결산보고서안

#### 4. 기타 기금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융자조건 등) 기금의 융자기간, 융자금리, 융자절차,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, 세대당 융자규모와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융자금의 상환 등)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(이하 “채무자”라 한다)가 제7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상환기간전이라도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상환할 경우 채무자는 융자받은 날부터 상환일까지 연체 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.

1. 혀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
2.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
3.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
제9조(융자업무의 대행) ①구청장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약정에 의하며,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기금의 회계관리) 기금의 회계는 세입,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도시국장
2. 기금출납원 : 방재담당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금결산)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제13조(위탁사무에 관한 검사) 구청장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에 대하여 자금의 용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